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권익위,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현행범으로 체포

□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에 70만 여대로 추정되는 대포차\* 일제정리를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단속에서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, 해당 자동차는 공매 처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.

-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및 형사처벌하고, 자동차세·과태료 등이 체납된 자동차는 적발지의 시·구·군에서 공매처분,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자 일제정리 및 고발지침 마련 등임.
- 또한 대포상사 난립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상사 사업장 규모에 비례한 진열용 자동차 보유대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관련 단체에 권고함.

\* 대포차는 등록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이나 소유자도 현재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는 자동차로서 그 익명성으로 인해 교통위반·교통사고 시 뺑소니 유혹 등을 부추기고 있음.

□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100만 여대이며,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90만 여대(6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57만 대)에 달하고 이들 중 50만 여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밝힘.

- 대포차 등에 의한 자동차세·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약 4조원에 달하지만, 자동차의 이동성과 대포차의 익명성으로 인한 소재 파악이 힘들어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만 가능한 실정임.
- 체납된 자동차세·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행안부·경찰청·전국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징수협약을 체결하여 체납처분을 활성화 할 예정임.

□ 본 개선제도가 시행되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00만 여대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상당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, 책임보험 가입 간접강제 효과에 의해 무보험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.

- 아울러 국해부의 무보험·뺑소니 피해보장사업기금 지출이 점차 줄어 책임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(책임보험 안들고 자동차 운행하면 현행범 체포,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, 10/26)